

언론조정신청사례

편집자 주  
 본 사례는 연구자료이므로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위해  
 인용할 때는 가주소·가명 등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회사가 ○○병원의 의약품 입찰에서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았고,  
 부도난 모 업체가 전신이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06  
 청구명 :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 ○○의약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 ○)  
 피신청인 : 데일리팜  
 중재부 : 서울제4중재부  
 접수일 : 2008. 4. 22.  
 처리결과 : 각 합 의

**보도내용**

데일리팜 : 『○○병원 저가낙찰 의약품 공급여부 촉각』  
 제하의 기사 (2008년 4월 19일자)  
 내용 : 심바스타틴을 2원에 낙찰시키는 등 저가  
 낙찰 파문을 낳고 있는 ○○병원 입찰과 관련 제약  
 들의 의약품 공급여부에 업계의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중략)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곳은 ○○의약. 지난 1차  
 입찰을 통해 61품목과 4개 그룹을 가져가면서 20억  
 원 상당을 낙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이와 함께 이번 입찰에서 파란을 일으킨 ○○의약  
 에도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회사 설립배경  
 부터 배후의 인물 존재 여부까지 추측들이 이어지  
 고 있는 것.

○○의약은 부도난 모 업체가 전신이며 3명이 공  
 동투자를 해서 설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표자가 타 도매상 경리부서 출신인 것으  
 로 전해져 일각에서는 배후에 또 다른 업체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의약 주식회사 관련 보도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지는 지난 4월 19일자 『○○병원 저가  
 낙찰 의약품 공급여부 촉각』 제하의 기사에서 ○○  
 의약 주식회사가 ○○병원 입찰관련 문제의 중심에  
 서 있으며 낙찰시킨 의약품 규모가 20억 원에 이른  
 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약은 부도난  
 업체가 전신이며 3명이 공동투자를 해서 설립되었

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관련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00원

### 합의사항

#### 1. 제 목 : ○○의약 관련 정정보도

내 용 : 본지는 지난 4월 19일에 『○○병원 저가낙찰 의약품 공급여부 촉각』 제하의 기사에서 ○○의약이 부도난 업체가 전신이며 3명이 공동투자하여 설립되었으며 배후에 또다른 업체가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의약'은 현 대표이사 이○○이 작년 7월에 '○○팜(2002년 설립)'을 단독으로 인수하여 상호를 변경한 것이고, '○○팜'과 '○○의약' 모두 부도난 사실이 없으며 '○○의약'의 배후 업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2.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8년 4월 30일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게재하되, 오전 9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24시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데일리팜> 초기화면 왼쪽의 '주요뉴스' 목록 상단에 제목을 게재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연결되도록 하며,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활자와 같은 크기로,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로 게재한다.

3. 위 기간이 지난 후에도 조정대상 기사를 검색, 클릭하면 위 보도문도 같은 페이지에 나오도록 한다.

4. 피신청인이 위 2.항 및 3.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200

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5.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2.항 및 3.항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나머지 정정보도청구를 포기한다.

### 합의사항 이행결과

데일리팜 : 『○○병원 정기입찰 ○○의약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08년 4월 30일자)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 경찰서가 안양 초등생 시신 수색 중 사산아 2구를 발견했는데도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축소·은폐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10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수원서부경찰서 (서장 이 동 수)

피신청인 : 고뉴스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8. 4. 22

처리결과 : 합 의

### 보도내용

고뉴스 : 『안양 故 해진 양 발견 당시 사산아 2구 발견 경찰 '취쉬'』 제하의 기사 (2008년 4월 17일자 사회면)

내 용 : 경찰이 안양 초등생 사건 수사 당시 故 이 해진 양 시신발견지점 인근에서 암매장 상태의 사산아 2명을 발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빛고 있다.

특히 경찰은 '사산아는 현행법상 사람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상급기관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략)

당시에는 안양 초등생 사건이 실종에서 살해·암매장 사건으로 번져 전국민의 관심을 모았음에도 여론을 의식해 사산아 2구 추가발견 사실조차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축소·은폐 의혹이 일고 있다.

경찰은 당시 검정 비닐봉지에 싸여 있던 사산아 2구는 텃줄이 감겨 있는 채 심하게 부패된 상태로 발견돼 수원○○병원 영안실에 안치했으며, 이런 사실을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았다. (중략)

특히 경찰은 이 과정에서 병원 등 관계자에게 사산아 발견 사실을 외부에 말하지 말아달라는 '협조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략)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안양 故 혜진 양 발견 당시 사산아 2구 발견 경찰 '쉬쉬'』라는 기사가 사실과 달라 정정보도 합니다.

• 내 용 : 본 신문은 지난 4월 17일자 사회면 『안양 故 혜진 양 발견 당시 사산아 2구 발견 경찰 '쉬쉬'』 제하의 기사에서 경찰이 사산아 2구를 추가발견하고도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병원 관계자에게 외부에 말하지 말아달라고 협조요청을 하는 등 사건을 축소, 은폐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수원서부경찰서 수색 당시 사산아 2구를 발견하고 상급기관인 경기지방경찰청에 보고 후, 현재까지 관련사항을 수사 중에 있고, 병원관계자에게 동 사건에 대해 외부에 말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합의사항

1. 제 목 : 사산아 2구 발견 관련 정정보도

내 용 : 본지는 지난 4월 17일에 『안양 故 혜진 양 발견 당시 사산아 2구 발견』 제하의 기사에서 경기 수원서부경찰서가 안양 혜진 양의 시신 발견 당시 사산아 2구를 발견했으나 여론을 의식해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시신을 안치한 병원관계자에게도 발견사실을 공개하지 말라는 '협조요청'을 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수원서부경찰서는 사산아 2구를 발견한 당일 상급기관인 경기지방경찰청에 보고하여 수사지휘를 받아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해당 병원에게도 '협조요청'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2. 피신청인은 2008년 4월 2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고뉴스> 초기화면의 '주요뉴스' 목록 상단에 위 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이 연결되도록 하고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활자와 같은 크기로,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로 게재하며, 위 기간이 지난 후에 조정대상 기사를 검색하면 위 보도문도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2항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한 나머지 정정보도청구를 포기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합의사항 이행결과

고뉴스 : 『사산아 2구 발견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08년 4월 26일자 사회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 ○○○의 집 건축비로 쓴 것이다.

## 신청인 재단이 복지시설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및 지원금 등을 빼돌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64

청 구 명 : 반론청구

신 청 인 : ○○○재단

피신청인 : 한겨레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8. 3. 6.

처리결과 : 합 의

### 보도내용

한겨레 : 『장애수당·국고보조금은 재단 ‘짬짓돈’』 제하의 기사 (2008년 2월 4일자 13면)

내 용 : (전략)

국고보조금 맘대로 쓰고=사회복지법인 ○○○재단의 사례는 복지시설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과 후원금이 어떻게 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 재단은 2006년 7월 경기 ○○군에 중증장애인 시설인 ○○ ○○○의 집을 신축하면서 주방시설 등을 구입한다며 기능 보강사업비 1억 원을 신청했고, 관할구청인 서울 송파구청은 신청한 액수 그대로 지원했다. 그러나 재단은 이미 구입한 주방장비 등의 세금계산서를 첨부해 구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빼돌렸다.

또 같은 해 국제라이온스클럽으로부터 후원받은 8천만 원 가량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국고보조금으로 이미 산 점자장비를 다시 산 것처럼 속인 뒤

재단 산하인 서울○○○○○복지관에서 장애인들을 동원해 수익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수입은 재단으로 빼돌리기도 했다. 송파구청은 “복지관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약손지압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 2천만 원 가량을 재단이 가로챘다”고 밝혔다. 약손지압 사업에 참여한 한 시각장애인은 “몸이 불편한 것도 비참하지만, 우리 몸이 재단에 이용당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더 몸서리쳐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 재단 상임이사는 “현재 경찰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며 “수사 결과가 나오면 모든 진실이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비리 사실은 감독기관인 서울시와 송파구의 정기감사 때 한차례도 적발되지 않다가, 복지시설 관계자가 지난해 11월 국가청렴위원회에 진정을 하고 청렴위가 직접 조사에 나서면서 드러났다. 서울시와 송파구는 뒤늦게 다시 감사에 나서 대부분의 혐의를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 재단 재정비리 혐의 사실과 달라  
• 내 용 : 본지는 지난 2월 4일자 사회면 『장애수당·국고보조금은 재단 ‘짬짓돈’』 제하의 기사에서 ○○○재단의 횡령 혐의 등에 대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단은 다음과 같이 반론보도를 요청해왔습니다.

첫째, “재단은 이미 구입한 주방장비 등의 세금계산서를 첨부해 구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빼돌렸다”라고 하여 지원금을 횡령한 것처럼 기술하였으나, ○○○의 집 조기 개원을 앞두고, 물품장비의 선 구입 후 지원금 요청 방법을 취한 사항으로 횡령과는 거리가 먼 사항임을 알려왔습니다.

둘째, “또 같은 해 국제라이온스클럽으로부터 후

원받은 8천만 원 가량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국고보조금으로 이미 산 점자장비를 다시 산 것처럼 속인 뒤 〇〇 〇〇〇의 집 건축비로 쓴 것이다”라고 하여 후원금에 관하여 사기와 횡령을 한 것처럼 기술하였으나, 후원금은 후원의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는 바, 라이온스클럽 후원금은 애초부터 후원자의 후원목적인 〇〇 〇〇〇의 집 건축비용으로 지원한 것임을 후원자가 확인한 바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셋째, “송파구청은 ‘복지관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약손지압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 2천만 원 가량을 재단이 가로챘다’고 밝혔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나, 재단의 유일한 수익사업용인 송파구 건물 1층에 대해서 서울〇〇〇〇〇〇복지관의 약손지압 프로그램을 위하여 임대해 준 것이며, 2년 간 수익금의 50%인 8백 8십만 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송파구청은 보도내용과 같은 사실을 확인해 준 사실이 없으며, 또한 수익금은 정상적인 임대 수입임을 밝혀왔습니다.

넷째, “서울시와 송파구는 뒤늦게 다시 감사에 나서 대부분의 혐의를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라고 보도하고 있으나, 서울시 또는 송파구가 혐의 내용을 적발하여 경찰에 수사의뢰한 바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 합의사항

1. 제 목 : 밝혀왔습니다

내 용 : 2008년 2월 4일 사회면 『장애수당국고보조금은 재단 ‘짚지돈’』 기사 관련 = 본지는 〇〇〇〇재단이 중증장애인 시설인 〇〇〇의 집을 신축하면서 국고보조금을 빼돌리고 점자장비 구입을 위한 후원금도 다른 용도로 사용했으며, 재단 산하인 서울〇〇〇〇〇〇복지관에서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의

수익금도 가로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〇〇〇〇재단은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사실이 없고 후원금은 본연의 후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으며, 서울〇〇〇〇〇〇복지관의 수익금을 가로챈 것이 아니라 계약에 따라 수익금의 50%를 임대료로 받은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이 건에 대해 서울시와 송파구가 직접 경찰에 수사의뢰한 사실이 없기에 바로잡습니다.

2.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8년 3월 27일까지(토요일·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겨레 2면에 게재하되, 한겨레의 통상적인 반론보도문 제목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 기사 본문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3.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한겨레 인터넷 홈페이지에 저장되어 있는 조정대상기사 아래에 게재하여 조정대상 기사를 검색하면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4.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겨레 : 『반론신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3월 26일  
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실시한 학습법 특강이 대학에서  
학점 잘 따는 비법을 가르쳐주기 위한  
특강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슈감표명)**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96

청 구 명 : 반론·손배청구  
 신청인 : 오○○  
 피신청인 : 조선일보  
 종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수일 : 2008. 4. 7.  
 처리결과 : 각 합 의

### 보도내용

조선일보 : 『대학마저 “성적 잘 받으려면...”』 제하의 기사 (2008년 4월 4일자 A12면)  
 내 용 : (전략) 비슷한 시각, ○○대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강의가 열렸다. 제목은 ‘중간고사 시험 대비 학습법 특강’. 강사로 나선 ○○대 ○○학습센터 오○○ 연구교수가 나눠준 자료에는 “단답형 문제 대비를 위해 주요 단어는 철자를 꼭 확인할 것”, “외울 때 손으로 직접 써가며 암기할 것”, “시험 공부를 철저히 하면 시험이 불안하지 않다” 등의 내용이 쓰여 있었다.  
 마치 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입시학원의 행사를 방불케 하는 이날 행사는 취업과 학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마련됐다. ‘학점 잘 따는 비법’까지 대학이 손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후략)

###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대 학습법 특강에 대한 반론
- 내 용 : 본지는 지난 4월 4일자 A12면 『대학마저 학점 잘 받으려면...』 제하의 기사에서 대학이 학점과 취업경쟁이 심해짐에 따라 학점 잘 따는 비법을 손수 가르쳐주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대학교의 학습법 특강 자료의 일부 지엽적 내용을 발췌하여 보도하고 특강을 진행한 교수의 이름과 소속, 직위 등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학교 ○

○학습센터 오○○ 연구교수는 “○○대학교에서는 편입생, 새터민, 신입생 및 복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습법 특강을 실시하였으며, 단순히 학점을 잘 받는 요령이나 비법이 아닌 인간의 학습 과정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원리 및 대학에서 더 깊이있게 공부하는 방법과 태도에 대하여 다루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

### 합의사항

1. 피신청인 대리인은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유감을 표하도록 한다.  
 ▷내 용 : 지난 4월 4일자 사회면 『대학마저 “성적 잘 받으려면...”』 제하의 보도와 관련하여 오○○ 교수께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해당 기사는 일부 대학에서 입시학원을 방불케 할 정도로 학점 잘 받는 기술을 가르치는 특강이 늘고 있는 현상을 비판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작성된 기사였으나, 그 과정에서 담당 교수의 실명이 게재되고 강의내용과 관련된 일부 내용이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향후 충실한 취재와 보도를 통해 대학 관련 보도에서 건전한 비판과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본 보도와 관련하여 오○○ 교수께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2. 피신청인은 ○○대학교에서 신청인이 진행할 학습법 특강과 관련하여 향후 취재·보도할 경우, 신청인 및 ○○대학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1항, 제2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나머지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을 포기하며,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그 임직원에게

게 다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 신청인 기업이 '○○○병원 그룹'에 사실상 공짜로 인수되었으며 R&D에 많은 투자를 않는다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98

청 구 명 : 정정·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공업(주) (대표이사 이○○, 김○○)

피신청인 : 헬스코리아뉴스

중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8. 4. 8

처리결과 : 각 합 의

### 보도내용

헬스코리아뉴스 : (1) 『○○제약 “○○○그룹에 먹힐 순 없다?”』 제하의 기사 (2008년 1월 8일자)

내 용 : (전략) ○○약품은 ○○○병원그룹의 사실상의 계열회사로 ○○○병원 이□□ 이사장의 부인인 김○○ 씨가 대표로 있다.

○○○병원은 ○○약품을 사실상 공짜로 인수(?)했다는 비난을 받았었다.

지난 2004년 ○○약품은 공정공시를 통해 자사주 400만 주(1주당 5,600원)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해 224억 원의 자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당시 제3자 배정 대상자는 김○○ ○○○그룹 회장(105만여 주), 이□□ ○○○병원 원장(100여만 주) 등 14명으로 대부분 ○○○그룹 관련자들이었다.

그런데 ○○약품은 이후 ○○○그룹 계열인 ○○○○○

코아를 유상증자 자금 224억 원에 인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룹이 공짜로 ○○약품을 먹은 꼴이 됐다.

○○○그룹은 당시 이같은 방식을 ‘소자본합병’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그룹의 적대적 M&A에 맞서기 위해 김○○ 회장 측이 향후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 『외양은 제약회사…○○약품 “시선집중”』 제하의 기사 (2008년 4월 1일자)

내 용 : LG생명과학, 한미약품, 바이넥스 등 3개사가 지난해 매출의 10% 이상을 R&D에 투자한 반면 대한약품, ○○약품, 대한뉴팜 등 3개사는 매출액 대비 R&D 비중이 1%에도 못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후략)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제약, “○○○그룹에 먹힐 순 없다?”』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1월 8일자 『○○제약 “○○○그룹에 먹힐 순 없다?”』 제하의 기사에서 ○○제약의 주식을 ○○약품이 추가 취득하자 ○○제약의 1대 주주인 김○○ 회장이 자사주 지분을 추가로 취득했다는 내용을 게재하면서 관련이 없는 ○○약품의 대주주인 이□□ 및 김○○ 주주가 ○○약품을 공짜로 인수했다는 등의 기사를 보도함으로써 ○○약품 주주 및 금융기관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켰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원

###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 제 목 : 『외양은 제약회사... ○○약품 “시선집중”』 관련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4월 1일자 『외양은 제약회사... ○○약품 “시선집중”』 제하의 기사를 통해 상장 제약사 R&D 분석기사를 보도하면서, ○○약품의 이름을 헤드타이틀에 제시하고 ○○약품이 R&D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약품 측은 ○○약품이 투자한 계열사인 ‘○○○○화학(주)’, ‘○○○지놈(주)’, ‘○○○○메드(주)’의 계열사가 ○○약품의 R&D 기능을 일부 수행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 합의사항

1. 제 목 : ○○○○공업 관련 반론보도문

내 용 : 본지 2008년 4월 1일자 『외양은 제약회사... ○○○○ “시선집중”』 제하의 상장 제약사 R&D 투자비용 분석기사와 관련, ○○○○공업(주) 측은 ○○공업이 투자한 계열사인 ‘○○○○화학(주)’, ‘○○○지놈(주)’, ‘○○○○메드(주)’가 ○○○○ R&D 기능을 일부 수행하고 있어 투자비용이 다소 낮게 책정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한편 2008년 1월 8일자 『○○제약 “○○그룹에 먹힐 순 없다?”』 제하와 관련, ○○○○공업은 ○○제약의 지분 확대를 통한 경영권 참여가 목적이라고 알려왔습니다.

2.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헬스코리아뉴스> 사이트에 2008년 4월 21일부터 4월 26일까지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반론보도문 본문의 제목 및 내용은 조정대상보도의 부제목 및 내용과 동일한 활자와 크기로 하며, 메인 화면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고, 메인 화면의 우측 중앙에 조정대상기사의 제목을 250×40 픽셀 크기의 박스기사로 게재한다.

3.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과 소속임직원에 대한 더 이상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합의사항 이행결과

헬스코리아뉴스 : 『○○○○공업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8년 4월 21일자)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 신청인 회사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선정적인 이벤트 행사를 후원한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8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식회사 ○○○ (대표이사 손 ○ ○)

피신청인 : 스포츠월드

중 재 부 :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 2008. 3. 21.

처리결과 : 각 합 의

### 보도내용

스포츠월드 : 『야해도 클릭수만 늘다면 ... ○○○ 선정성 전략 논란』 제하의 기사 (2008년 3월 18일자 IT면)

내 용 : #장면1

핫팬츠와 탱크톱만 착용한 레이싱걸들이 포켓볼을 즐긴다. 마치 각본을 짠듯 이들은 자신의 가슴골을 과시하며 연신 허리를 굽힌다. 탱크톱 한 쪽에는

‘OOO’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졌다. 방송을 중계하는 MC의 멘트는 적당히 야한 표현으로 귀를 자극한다.(제2회 곰TV OOO배 레이싱모델 빌리어드 챔피언십)

#### #장면2

서울 압구정동의 한 클럽. 싱가포르의 한 맥주회사가 마련한 클럽 파티에는 호피무늬를 입은 젊은 여성들이 일제히 춤을 추기 시작했다. OOO이 후원하는 이 파티에는 호피무늬만 입었다면 입장 1순위. 참가자 대부분이 성인이었지만 ‘놀이 마시는’ 이 클럽 파티의 적나라한 모습은 UCC 동영상으로 청소년들의 눈과 귀에 흘러들어갔다(최고의 타이거걸을 찾아라).

지난해 동영상 전문 포털을 선언하면서 권토중래를 노렸던 OOO이 선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OOO은 동영상 포털 선언 이후 레이싱걸 포켓볼 대회를 비롯, 각종 클럽 행사를 후원하면서 UCC 콘텐츠 확보에 팔을 걷어 붙였다.

그런데 이를 통해 제작된 동영상에 선정적인 장면이나 멘트가 무분별하게 등장한다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레이싱걸 포켓볼 행사의 경우 탱크톱 한 켠에 ‘OOO’ 로고를 새겨넣어 자연스럽게 시선이 쏠리도록 유도하는 등 대형 포털로서 선정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게 문제다. 이러한 동영상은 여과없이 초고속 인터넷망을 타면서 청소년들에게 배포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대형 검색포털과의 경쟁에서 과도하게 뒤쳐진 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이겠다는 의도라고 입을 모은다. 포털업계 관계자는 “힙합 마니아 출신 CEO를 영입한 터라 놀고 마시는 문화에 유독 OOO은 자비로운 것 같다”면서 “눈요기거리나 클릭수 제고에 도움이 될만한 콘텐츠마다 늘 OOO이 나서 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에 반해 OOO 측은 문화의 한 코드라는 차원에서 각종 행사를 후원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타이거걸’ 클럽 행사의 주최 측인 맥주회사가 제공한 홍보용 포스터를 보면 노출을 자극하는 문구가 여과없이 등장한다. 이 파티에는 싱가포르 여행권이 경품으로 등장한다는 소식 탓에 젊은 남녀들이 몸을 사리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근래 들어 OOO은 곳곳에 무리수를 던지는 모습이다. 태동하는 UCC 기반 동영상 콘텐츠를 확보하고 전문 영역을 구축한다는 거창한 포부만큼, 아찔한 순간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유저 끌어모으기에만 집착, 선정성 문제 등 부작용의 파생 빈도도 잦아졌다. 그러나 OOO은 트래픽을 높이고 유저들이 몰려들면 인지도가 다소 올라가지 않겠느냐는 계산이었지만, 반짝 인기는 금새 트래픽 하락으로 이어졌다. (중략)

OOO은 지난 2002년 OO홈피라는 개인화 서비스를 유료 모델로 전환한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다. 시행착오를 초래한 전OO 사장은 경질됐고, 후임자 고OO 대표 역시 프리미엄 서비스인 ‘O’으로 도약을 시도했으나 이른바 ‘다이아몬드 마케팅’ 등에 50억 원만 탕진한 채 사퇴를 택했다. 2005년 당시 30살이던 손OO 씨가 대표직을 이어받았지만 하락세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철지난 FPS 장르로 온라인 게임에 도전, 결국 고배의 쓴 잔을 마셨다. 심지어 지난해 10월 이후 업데이트조차 지지부진한 상태다. 차트 순위에서도 100위권 밖으로 튕겨나갈 위기에 처했다. (후략)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주식회사 OOO 관련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는 지난 3월 18일자 IT면 『야해도 클릭수만 늘다면... OOO 선정성 전략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주식회사 ○○○이 동영상 UCC 관련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선정적인 이벤트를 집중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해당 기사에서 언급한 이벤트는 선정적인 이벤트가 아니었고 주식회사 ○○○이 선정적인 이벤트를 집중 지원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으며, 아울러 해당 기사를 통해 보도한 대부분의 주식회사 ○○○ 관련 사실이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 합의사항

1. 제 목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합의문  
 내 용 : 지난 2008년 3월 18일자 IT면 『야해도 클릭수만 는다면... ○○○ 선정성 전락 논란』 제하의 기사 중, 주식회사 ○○○이 후원한 맥주행사의 주최 측이 제공한 홍보용 포스터에 노출을 자극하는 문구가 여과 없이 등장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관련 이미지는 행사안내를 위한 보도자료에 삽입된 이미지로, 홍보용 포스터에는 선정적인 문구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2. 피신청인은 오프라인 스포츠월드 IT면에 상자기사로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하여 2008년 4월 14일(토요일, 공휴일 제외)까지 게재한다.
3. 피신청인은 스포츠월드 인터넷홈페이지(<http://www.sportsworldi.com>) 초기화면 상단에 2008년 4월 14일까지 24시간 동안 위 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고

제목 클릭하면 내용이 연결되도록 하며, 원 조정대상 기사를 검색·클릭하면 위 보도문이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4. 피신청인은 세계일보 인터넷홈페이지(<http://www.segye.com>)에 게재되어 있는 원 조정대상기사는 삭제하도록 하며, 기사 제휴관계에 있는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 협조공문을 보내 조정대상 기사를 삭제하도록 한다.

5. 피신청인은 2008년 4월 28일까지 주식회사 ○○○이 진행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각종 행사 및 사업과 관련하여 취재·보도하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신청인과 사전에 협조 및 협의하도록 한다.

6. 피신청인 대리인은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유감을 표하도록 한다.

▷내 용 : 지난 3월 18일자 IT면 보도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이 선정적인 이벤트를 집중 지원하는 전락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하여 주식회사 ○○○에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향후 충실한 취재와 보도를 통해 동영상 전문 포털화를 주력사업으로 선정하여 각고의 노력을 펼치고 있는 주식회사 ○○○에 대해 건전한 비판과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본 보도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과 그 임직원 및 관련자들에게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7.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나머지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포기하며,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그 임직원에게 다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합의사항 이행결과

스포츠월드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합의문』 제하의 기

사 (2008년 4월 8일자 IT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자동차 연료절감장치로 인한 자동차 피해사례를 보도하면서 신청인 제품의 성능이 떨어지고 자동차 고장을 불러 일으킨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80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주)○○○테크놀로지 (대표이사 최 ○ ○)  
피신청인 : SBS-TV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8. 3. 20.  
처리결과 : 합 의(정정)  
취 하(손배)

### 보도내용

SBS-TV : 「출발 모닝와이드」 프로그램 (2008년 2월 15  
일 07:30)

내 용 : (전략) ▶이○○ 리포터 : 기름값 걱정에 허  
리필날 없는 여러분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바로 움  
직이는 만큼 연료를 쓴다는 꿈에 연료 절감장치.

▶K업체 관계자 : 연료공급의 문제점을 근본적으  
로 해결했다고 보면 되거든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로 개발된 겁니다.

▶손○○ 아나운서 : 이런 장치가 있네요.

▶이○○ 리포터 : 의혹과 논란 속 이른바 연료  
절감장치가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수  
많은 명차들도 차마 해내지 못했던 기름값 절감의

꿈이 드디어 이루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이  
공개됩니다. (중략)

▶자 그러다 보니 요즘 제테크 못지 않게 유행하  
는 것이 이른바 유테크, 바로 기름값 절약 비법인데  
요.

▶손○○ 아나운서 : 저도 몇 가지 알아요.

▶이○○ 리포터 : 예. 그런데 이 유테크로 기름값  
아끼려다 소중한 애마가 그만 애물이 되었다는 사  
람들이 있었습니다.

▶운전수 : 차가 이래 가다가 시동이 툭 꺼져 버  
려요.

▶이○○ 리포터 : 그러면 위험하잖아요.

▶운전수 : 가다가 서고 가다가 서고 조금만 가면  
또 서고 또 서고 하는데.

▶손○○ 아나운서 : 상당히 위험한데.

▶제보자 : 갑자기 시동이 꺼지면서 시동이 다시  
안 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리포터 : 달리던 자동차가 갑자기 시동  
이 꺼져 버리는 위험천만한 순간이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는 한두 명이 아니었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중략)

▶이○○ 리포터 : 그런데 제품을 직접 써본 사람  
들의 말은 조금 다릅니다.

▶김○○ 피해자 : 연료절감되고 매연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걸 달면 좋다고 하는 기라. 어이가 없어  
죽겠어요.

▶이○○ 리포터 : 40년 간 운전을 해 왔다는 김  
씨는 연료절감이라는 말에 분통부터 터트립니다.

▶김○○ 피해자 : 이걸 잘라서 기능을 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는데 가서 해 봐야 돼. 지금 순 엉터  
리로.

▶이○○ 리포터 :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번쯤 귀  
가 솔깃할 연료절감장치. 판매자와 운전자들의 주장  
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업체 측에서 말하는 연료절감장치인 데요. 과연 성능이 어떤지 직접 시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cc 휘발유 자동차를 준비해서 자동차가 똑같은 힘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봤습니다. (중략)

▶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 기계적인 장치를 해서 일정하게 똑같은 RPM으로 유지하기 위해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이○○ 리포터 : 연료절감장치를 사용하기 전과 후에 각각 얼마나 기름을 사용했는지 알기 위해 똑같은 양의 연료를 담았습니다.

▶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 정상적인 차에서 연료량이 얼마나 소모되는지 규정 RPM을 올려가지고 알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이○○ 리포터 : 기존 RPM을 올려놓고 확인해 보는 거죠. 똑같은 양의 기름을 저렇게 집어 넣고요. 15분 동안.

정상적인 상태에서 15분 동안 연료가 얼마만큼 소모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었나요?

▶실험자 : 네.

▶이○○ 리포터 : 자, 각각 2리터의 휘발유를 주입했는데요. 연료절감장치를 쓴 쪽과 그렇지 않은 쪽과 어느 쪽의 연료가 더 많이 소모되는 걸까요. 이것은 연료절감장치를 달지 않은 차량입니다. 정확히 15분 동안 주행한 이 차는 기름을 얼마나 썼을까요.

정상적인 차량에서 15분 동안 운행한 차량에서 남아있는 기름의 양인데요. 보겠습니다.

자 따라 보겠습니다. 따라 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남은 휘발유가 680cc 였습니다.

▶손○○ 아나운서 : 네.

▶이○○ 리포터 : 자 보셨죠. 동일한 장치에 연료

절감장치를 단 후 역시 15분 동안 주행을 했습니다.

이때 연료절감장치를 단 차량에 기름이 더 많이 남아있다면 효과가 있다는 얘기 인데요.

▶손○○ 아나운서 : 덜 썼다는 얘기 인데요.

▶이○○ 리포터 : 예. 보시다시피 똑같은 조건입니다. 8초, 9초, 15분. 됐어요.

아까와 똑같은 조건에서 15분 동안 운행을 해보았는데 연료가 얼마나 소모가 되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똑같이 따라 보았는데 얼마큼 남을까요. 720cc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조건에서 달렸을 때 연료절감장치를 단 차량, 확실히 기름을 많이 남겼는데요. 그렇다면 수많은 피해자들의 주장은 단지 우연이었을까요?

▶손○○ 아나운서 : 50cc는 절약이 되었어요, 이게.

▶이○○ 리포터 : 연료 절감이 된 건가요?

▶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 이게 연료 절감이 아니고요. 아, 이 양으로 보면 연료절감이 된 것 같잖아요.

▶이○○ 리포터 : 비밀은 바로 여기 속도 계기판에 있었습니다.

▶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 아까 악셀을 밟은 양에서 먼저는 170km로 나갔는데 장착하고 나니까 120km 밖에 안 나갔다, 그러면 한 50km가 안 나가잖아요. 50km가 안 나가면 안 나간 만큼 안 나간 거지, 이게. 연료를 차단한 거지, 연료절감기가 아니죠.

▶손○○ 아나운서 : 아. 속도가 안 나가고.

▶이○○ 리포터 : 연료절감장치는 기름을 덜 사용하는 대신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차에 무리를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적은 양의 기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엔진에 무리를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같은 양의 기름을 넣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적게.

▶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 당연히 차에 무리를 주게 되죠, 저렇게 되면, 역지로 연소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엔진 자체에 점점 무리가 가서 엔진한테 연료 장치라든가 모든 장치들이 어떤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죠.

▶이○○ 리포터 : 업체 측에서는 제품자체에 결함이 있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K업체 관계자 : 설치를 잘못했다든지 그러면 그럴 수도 있죠.

제품 자체 내에서는 결함이 있을 수가 없고.(후략)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방송은 지난 2월 15일 「출발! 모닝와이드」 프로그램 『꿈의 기름값 절감장치의 비밀』 제하의 방송에서 K사의 연료절감장치로 인한 피해사례를 보도하고 실험을 통해 K사의 연료절감장치의 문제점이 확인됐다는 내용을 방송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K사 연료절감장치의 성능을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험 차량에 적합한 제품을 장착하고 부착위치를 정확히 지정해야 함에도 실제 방송 내용 중에는 제품 장착 설명서와는 전혀 다른 곳에 제품을 설치하고 공인되지 않은 시험기관과 실험자로 하여금 실험을 진행토록 해 아무런 문제가 없는 K사 제품의 신뢰성을 떨어뜨린 것으로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3,000,000,000원

### 합의사항

1. 제 목 : 자동차연료절감장치 관련 반론보도

내 용 : 본 방송의 지난 2월 15일 『꿈의 기름값 절감장치의 비밀』 제하의 보도와 관련하여, K사는 방송된 소비자들의 피해는 메뉴얼대로 제품을 장착하지 않아 발생한 것일 뿐 제품 자체로 인한 고장은 아니고, 방송 중 이뤄진 실험에서 제품이 메뉴얼과 다른 위치에 장착된 채 진행됐으며, K사의 의뢰로 제품을 시험한 모 시험연구원은 해당 제품이 연비개선의 대안으로 기대된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고 밝혀 왔습니다.

2.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8년 4월 25일까지 SBS-TV 「출발 모닝와이드」 프로그램 말미(클로징 멘트 전)에 보도하되,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화면(방송된 제품사진 노출)으로 하고 제목은 화면 하단에 계속 표시하며 내용은 진행자(男)로 하여금 통상의 속도로 낭독하게 한다.

3. 피신청인이 위 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2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4. 피신청인이 위 2.항을 이행한 경우, 본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정정보도청구를 포기한다.

### 합의사항 이행결과

SBS-TV : 「출발! 모닝와이드」 프로그램 (2008년 4월 18일 07:3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병원이 다른 병원에서 보내온  
조직검사 결과만을 믿고 유방암 진단을 해  
멸절환 사람의 가슴 절제 수술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청청 및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85  
 청구명 : 정정청구  
 신청인 : 서울대학교병원 (원장 성○○)  
 피신청인 : 한겨레  
 중재부 : 서울제6중재부  
 접수일 : 2008. 3. 25.  
 처리결과 : 합의

### 보도내용

한겨레 : 『멀쩡한 사람 ‘가슴 절단’ 황당사고』 제하의 기사 (2008년 3월 3일자 8면)

내용 :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과 서울대병원이 뒤바뀐 조직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멀쩡한 사람한테 유방암 진단을 내린 뒤 가슴을 잘라내는 수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아무개 씨는 2005년 11월초 한국의학연구소의 종합건강검진에서 “오른쪽 유방에서 손톱크기의 혹이 발견됐다”는 말을 듣고 신촌세브란스병원을 찾았다. ㄱ교수는 초음파와 조직검사를 한 뒤 김씨에게 “오른쪽 유방의 혹은 암이며, 큰 수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좀더 큰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보자”는 주변의 권유에 따라 김씨는 서울대병원을 찾아갔다. 서울대병원의 ㄴ교수도 세브란스병원에서 전달받은 조직검사 결과를 검토한 뒤 “오른쪽 유방의 혹이 암 1기 중간쯤 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김씨는 같은 해 12월 2일 서울대병원에서 오른쪽 유방의 4분의 1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보름쯤 지난 뒤 김씨는 어처구니없는 소식을 들었다. 서울대병원에서 “수술로 떼어낸 조직에서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알려온 것이다. 서울대병원이 세브란스병원으로부터 김씨의 조직검사 원본 슬라이드 등을 받아 다시 검토했는데도 암세포는 발견되지 않았다.

두 병원이 자체적으로 진상을 파악해보니, 세브란스병원이 김씨의 것이라고 보낸 조직검사 슬라이드 사진이 다른 환자의 것이었고, 서울대병원은 재검사 없이 수술을 진행해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후략)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목 : 『멀쩡한 사람 ‘가슴 절단’ 황당사고』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문

• 내용 : 본지는 지난 3월 3일자 8면 『멀쩡한 사람 가슴 절단 황당사고』 제하의 기사에서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과 서울대병원이 뒤바뀐 조직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멀쩡한 사람에게 유방암 진단을 내린 뒤 가슴을 잘라내는 수술까지 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서울대병원은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잘못 전달된 ‘암이 확실하다’는 조직검사를 무턱대고 신뢰한 것이 아니라 당해 환자에 대하여 유방암 진단을 위한 검사(유방촬영, 초음파검사뿐 아니라 MRI검사)를 시행한 후 암으로 의심되는 병변이 있는 것으로 진단하였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이러한 검사결과에 근거하여 수술을 시행했으며, 수술 후 시행된 조직검사서 ‘증식성이 강한 암 위험성 있는 병변으로 적절하게 제거된 것임’을 확인까지 했습니다. 따라서 ‘재검사 없이 멀쩡한 사람의 가슴을 절단했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른 것이어서 이를 바로잡습니다.

### 합의사항

1. 제목 : 바로잡습니다

내용 : 본지 지난 3월 3일자 8면 『멀쩡한 사람 ‘가슴 절단’ 황당사고』 제하의 기사에서 서울대병원이

환자의 조직을 재검사하지 않았다고 보도하였으나, 서울대병원은 해당 환자에게 유방조영술, 초음파, MRI 등 유방암 진단을 위한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서울대병원은 해당 환자에게서 증식성이 강하고 암으로 의심되는 종양이 발견되어 수술을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2.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겨레> 2면에 2008년 4월 10일까지(토요일 제외)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한겨레의 통상적인 '바로잡습니다'와 같은 활자 크기의 고딕체로, 본문은 조정대상보도의 본문과 같은 활자크기로 게재한다.

3.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한겨레>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조정대상기사 검색시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4.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에 대한 일체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겨레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8년 4월 8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 청소년 성폭력 사건 수사과정을 밀착취재, 보도하면서 성폭력 피해자인 신청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8서울조정97

청 구 명 : 손해청구

신 청 인 : 김○○

피신청인 : tvN

종 재 부 :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 2008. 4. 8

처리결과 : 합 의

### 보도내용

tvN : 「나는 형사다」 프로그램 (2008년 3월 27일 23:00)  
내 용 : ○경찰서 강력 1팀에 심상치 않은 사건이 접수되었다.

교복을 입은 어린 여학생 한 명이 강력계를 찾은 것이다.

아이는 몹시 겁을 먹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아이는 하굣길에 한 남자를 만났는데, 남자는 아이의 친구와 잘 아는 사이라며 자신의 집에 놀러가자고 했다.

그런데 집 안에 들어가자 곧 본색을 드러낸 남자.

아이는 놀라 도망쳐 나왔다고 했다.

파렴치한 청소년 성폭력 사건이었다.

정확한 피해 사실을 알기 위해 진술 녹화를 시작했다. (중략)

용의자의 사진이 확보되었으니 피해자에게 확인을 받을 차례다.

아이가 학교에 있을 시간이기엔 직접 사진을 들고 찾아가기로 했다.

마침 점심시간.

교정엔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교사 :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막 뛰어다녀서 한 5분 후에 아이가 있을 거예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잠시 후 아이가 왔다.

▷김 : 왔어? 앉아봐.

사진 보면 알지?

▷정미(가명) : 네. 맞아요.

▷김 : 맞지?

▷정미 : 맞아요. 옷도 똑같아요. (후략)

###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tvN은 지난 3월 27일 「나는 형사다」 프로그램 『인면수심 미성년자 성폭행범』 제하의 방송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신청인 사건을 보도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신청인의 동의 없이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경찰과의 대화 내용을 촬영·방송하고 형사들이 직접 학교에 찾아가 신청인에게 용의자를 확인하는 과정 역시 몰래카메라를 통해 촬영 및 방송해 결과적으로 신청인 학교의 학생들 및 주변인들이 신청인이 성폭력 피해자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신청인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으므로 100,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합니다.

### 합의사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8년 5월 8일까지 금 5,000,000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 및 보도과정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과 소속임직원에 대한 더 이상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